

건설업 인사노무 관리 실무 1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 시·도회를 순회하며 노무강습회를 실시했다. 본지는 회원사의 노무관련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회 노무강습회 교재로 사용된 '건설업 인사노무관리 실무'를 이번호부터 연재한다. [편집자주]

- 본지 연재 계획 -

1. 2013년 달라지는 노동법 해설
2.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실무
3. 4대 보험 정산 대응
4. 일용근로자 인사·노무관리 실무
5. 노동부 지원금 제도



2013년 달라지는 노동법 해설

법령	주요 신설 및 개정 법령 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배우자 출산휴가 / 가족돌봄휴직 [시행일 2013. 2. 2]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별적 처우” 세부사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별적 처우” 세부사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퇴직금 사용자 부담수준

법령	주요 신설 및 개정 법령 내용
최저임금법	2013년 최저임금 시급 4,860원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1,015,740 이상)
사회보험법	(1) 고용보험법(적용제외 근로자/고용조정의 지원) (2) 고용보험법 시행령(업무의 대행/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고용촉진지원금/임금피크제지원금/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실업인정특례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평균임금증감에 관한 특례/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정지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부담금 세분화/장애인대학생 기업연수제 신설/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 기구 확대 조정/사업장 위험평가/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경미한 건설공사 기준 상향조정

1.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구분	신설 및 개정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시행시기 확정 [시행일 2013.2.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장 규모에 따른 시행시기 확정 [시행일 2013.2.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시행일 : 2013. 2. 2]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④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 ⑥ · ⑦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⑧ 가족돌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3. 2. 2]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 이법 시행 후 휴가 등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 부칙 제2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족돌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설 및 개정 이유

- 근로자의 일 · 가정 양립 지원

* 관리방안

- 시행시기 확인(사업장 규모에 따른 시기)
- 취업규칙 변경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구분	신설 및 개정
차별적 처우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국회의결 2013.2.26, 공포 3.22 시행 9.23〉

3. “차별적 처우”

-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다. 경영성과에 따른 상여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신설 및 개정 이유

-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등 차별적 처우 명확화 기준 마련

* 관리방안

- 비정규직 운영 현황과 차별 요소 검토 및 대책 마련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구분	신설 및 개정
차별적 처우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밖에 근로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국회의결 2013.2.26, 공포 3.22 시행 9.23>

3. “차별적 처우”

-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다. 경영성과에 따른 상여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신설 및 개정 이유

-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등 차별적 처우 명확화 기준 마련

* 관리방안

- 차별 검토 및 대책 마련

4.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구분	종전	신설 및 개정
4인이하 퇴직금 사업주부담 (부칙제8조)	2010.12.1 부터 2021.12.31까지 100분의 50	2013년 1월 1일부터 법 제8조 규정에서 정하는 수준(100분의 100)

* 신설 및 개정 이유

-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운영 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5. 최저임금법

구분	종전	신설 및 개정
최저임금	시급 4,580원	시급 4,860원

* 관리방안

- 2013년 최저임금 적용한 임금 관리
- 2013년 최저임금액 사업장 계시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구분	종전	신설 및 개정
장애인 고용 부담금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중 1/2이상 인원의 경우 부담기초액 (1인당 월 59만원)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만 인원의 경우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2가산 (월 88만5천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 (월 95만7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중 3/4이상 인원의 경우 부담기초액 (1인당 월 626,000원) 의무고용 인원의 1/2~3/4미달 인원의 경우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4 가산 (월 782,500원) 의무고용 인원의 1/2 미만 인원의 경우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2 가산 (월 939,00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고임금액 (월 1,015,740원)
장애 대학생 기업 연수제	신설	재학·휴학중인 대학생들이 1~2개월간 사업체,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연수 받도록 지원하며, 연수생에게는 월 400,000원, 참여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연수지원금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신설	특수학교(급) 3학년생 및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3~6개월간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일반사업체에서 현장실습 훈련을 받도록 지원하며, 연수생에게는 1일 12,000원, 사업체보조금으로 1인당 1일 17,650원 지원

